

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74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1. 8. 25.

제안자 : 남양주시장

1. 제안이유

행정안전부의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민간위탁, 수탁기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 (안 제2조)

나. 불필요한 공증 의무 규정 삭제 (안 제10조)

다.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(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)에 맞지 않는 이의신청 조항 정비 (안 제13조)

3. 개정조례안 : 별첨

4. 비용추계서 : 붙임 1

5. 성별영향평가 결과 : 붙임 2

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사무중 일부를 남양주시 산하 기관이 아닌”을 “사무 중”으로, “행정참여”를 “행정 참여”로, “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”을 “행정능률의 향상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“민간위탁“이라 함은 각종 법률”을 ““민간위탁”이란 법률 또는 조례”로, “남양주시 산하기관이”을 “남양주시가”로, “개인에”를 “개인에게”로, “명의회 책임하에”를 “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사무를 위탁받은 남양주시 산하기관이 아닌”을 “권한을 위탁받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만료”를 “대하여 위탁기간 만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대해”를 “대하여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조례가”를 “조례에서”로, “의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”을 “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소관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등”을 “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업무 등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기술을 요하는”을 “기술이 필요

한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기타 시설관리등”을 “그 밖에 시설관리 등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각호에 해당되는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으로, “타당성”을 “타당성 등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선정 심사가 완료되면”을 “선정이 완료되면 자동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“위원회 심의에 전문성, 공공성”을 “심사의 전문성, 공정성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”를 “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현장확인 등을 할 수 있으며,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7조의2제2항 전단 중 “심사대상 기관은 위원에게”를 “해당 안전의 이해관계자는”으로, “의결로”를 “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”를 “제척사유”로 한다.

제8조 중 “수탁 사무”를 “수탁사무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행사함에 있어서”를 “행사할 때에”로 한다.

제10조의 제목 “(협약체결등)”을 “(계약체결 등)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.

①시장은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

1.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
2. 위탁사무의 내용 및 위탁기간
3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4. 지도·점검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
5. 위탁계약의 해지 및 위탁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1조제4항 중 “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”를 “제3항에 따라 해당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처리과정”을 “처리절차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위탁기관”을 “시장”으로 한다.

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3조 (이의신청 등)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
제14조제1항 중 “1회이상”을 “1회 이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”를 “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”로 한다.

제15조 중 “조례 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조례의 시행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 및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남양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<u>사무중 일부를 남양주시 산하 기관이 아닌</u>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, 민간의 자율적인 <u>행정참여</u>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<u>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</u>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 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<u>“민간위탁“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남양주시장(이하 “시장“이라 한다)의 사무 중 일부를 남양주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 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</u></p> <p>2. <u>“수탁기관”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남양주시 산하기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사무 중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행정 참여</u> ----- ----- <u>행정</u> <u>능률의 향상</u>----- -----.</p> <p>제2조 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<u>“민간위탁”이란 법률 또는 조 례-----</u> ----- ----- <u>남양주시가</u>--- <u>개인에</u> <u>게</u> --- <u>명의로 그의 책임 아</u> <u>래</u> ---.</p> <p>2. ----- <u>권한</u> <u>을 위탁받은</u> -----</p>

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.

3. “재위탁”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.

4. “재계약”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 (적용범위)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4조 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- 1.·2. (생략)
- 3.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

-----.

3. -----
----- 대하여 위탁
기간 만료 -----

-----.

4. -----
----- 대하여 -----

-----.

제3조 (적용범위) -----

조례에서 ----- 따른다.

제4조 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-----
-----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
·검정·관리업무 등 -----

-----.

- 1.·2. (현행과 같음)
- 3.----- 기술이

요하는 사무

4.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
리사무

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
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
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
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
민간위탁을 한다.

③ ~ ⑤ (생략)

제7조 (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)

① (생략)

② 위원회는 수탁기관 선정 시
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
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
고, 수탁기관 선정 심사가 완료
되면 해산한다.

③ (생략)

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
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
하고, 위촉된 위원 중 어느 한
쪽의 성(性)이 60퍼센트를 넘지
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5. 그 밖에 위원회 심의에 전문
성, 공공성을 위하여 시장이
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필요한 --
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-----

②-----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-----
----- 타당성 등-----

-----.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7조 (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선정이 완료되면
자동 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----- 심사의 전문성, 공정
성-----

수 있다.

제8조 (수탁사무의 처리)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제9조 (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)

① (생략)

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.

제10조 (협약체결등)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협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.

-----.

제8조 (수탁사무의 처리) -----

----- 수탁사무 -----

-----.

제9조 (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행사할 때에 -----
-----.

제10조 (계약체결 등) ① 시장은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

1.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
2. 위탁사무의 내용 및 위탁기간
3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4. 지도·점검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
5. 위탁계약의 해지 및 위탁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

② 협약을 체결할 경우 협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- 1.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
- 2. 위탁기간
- 3. 위탁사무 및 그 내용
- 4.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
- 5. 지도점검,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
- 6. 계약의 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에 관한 사항
- 7.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(생략)

제11조 (지도·감독) ① ~ ③ (생략)

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12조 (사무편람)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, 처리기간, 처리과정, 처리기준,

정하는 사항

<삭 제>

② (현행 제3항과 같음)

제11조 (지도·감독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제3항에 따라 해당 -----

-----.

제12조 (사무편람) ① -----

----- 처리절차 -----

구비서류·서식, 수수료, 이용료, 회비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②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3조 (이의신청) ①민간위탁사

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,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변명서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하고,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4조 (처리상황의 감사) ①시장

②-----
----- 시장-----
-----.

제13조 (이의신청 등) 수탁기관의

민간위탁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
제14조 (처리상황의 감사) ①-----

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5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----- 1회 이상 -----
-----.

②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-----

-----.

제15조 (시행규칙) -- 조례의 시행에 -----
-----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동 조례 개정 후에도 세출 및 세입의 증감이 현저하게 발생하는 사항이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4. 작성자

행정기획실 자치행정과장 이유미

붙임2 성별영향평가 결과

-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 남양주 -



남 양 주 시



수신 자치행정과장
(경유)

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(2021A경기남양059)

1. 자치행정과-8184(2021.08.02.)호와 관련입니다.
 2. 귀 부서에서 제출한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「성별영향평가법」 제8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.
-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(2021A경기남양059) 1부. 끝.

남 양 주 시 장

주무관 여성정책팀장 여성아동과장 복지국장 전결 2021. 8. 3.

협조자

시행 여성아동과-19498 접수

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, (금곡동, 남양주시청 제1청사) / <http://www.nyj.go.kr>

전화번호 031-590-4491 팩스번호 031-590-2269 / kwonps@korea.kr / 비공개(5)

- 정약용의 도시 남양주! -

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

관리번호	2021A경기남양059		
정책명	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
소관부서	기관명	경기도 남양주시	
	부서명	자치행정과	
	담당자명	김지윤	전화번호 031-590-8935
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	2021년 8월 2일		
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(자치행정과)	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분석평가서 ✓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관련 조항, 표현 : 없음 ✓성별특성 반영 : 해당사항 없음 ✓성별 균형 참여 : 해당사항 없음 ✓성별 통계 : 해당사항 없음		
종합 검토 의견 (성별영향평가책임관)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개선사항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체개선안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선의견		
	'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' 과 관련 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, 성별특성 반영, 성별통계 구축, 성별 균 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		
검토의견 반영계획서	해당 없음		

「성별영향평가법」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.

2021년 08월 03일

남양주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

(담당자/연락번호 : 권필순/031-590-4491)

자치행정과장 귀하